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98회 임시회>

2011. 5. 19.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서 점 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5월 16일

2. 제 출 자 : 정수현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시 지원을 늘려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 영아의 부모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

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

3. 장애등급 6급 : 10만원

-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추가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출산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장애인 가정에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지원방법은 장애등급별 차등지원되며, 6급장애인에 대하여도 법적장애 등급판정이 된 만큼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그 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연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산지원금 등이 지원되며 일반인을 포함하여 출산도우미 지원도 가능하여 조례에 정한 지원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 타자치단체의 현황으로는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출산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각각 있으나 중복지원배제, 지원금 차등 등 지역실정에 따라 상이함.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한한다.)

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
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
3. 장애등급 6급 : 10만원
4. 위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p> <p>①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③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p>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 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 3. 장애등급 6급 : 10만원 4. 위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p>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p>

붙임3)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5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제정 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절하게 수렴, 관리, 대응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안제3조 (법령준수의무)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나. 안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안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 안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마. 안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 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바. 안제9조 (결과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5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상속 및 법인합병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 합산 기준 (안 제18조제2항)

-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21조의1)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상속 및 법인합병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본조례 제18조의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 제18조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기준의 대구시 본점 사업자등록기간에 대하여 합산기준을 신설 명시하여 법인합병, 사업양수, 상속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며,
- 또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 공제조항의 신설은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공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납세편

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향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균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와 균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 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설></p>	<p>제18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 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

<신 설>

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
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2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균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시세와 균세가 병기된 경우에
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
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

붙임3)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 ④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5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3개의 법률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신설·삭제·개정된 조문에 맞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2조, 안 제9조)
- 나.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다.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모법의 분법으로 인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규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련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동기일로부터”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을 “지급받은 징수촉탁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서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라”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을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되”으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달성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 -----</p> <p>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 ----- ----- -----.</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 ----- <u>그 밖의</u>-----에 따른 ----- ----- ----- ----- ----- -----.</p>

<p>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생략)</p> <p>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2. 3. (생략)</p> <p>4.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5. (생략)</p> <p>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p> <p>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체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④ ----- 4급 공무원 -----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급기준) ① ----- ----- -----</p> <p>1. 2. 3. (현행과 같음)</p> <p>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 ----- -----</p> <p>5. (현행과 같음)</p> <p>6. ----- ----- ----- 관계 규정에 따라 ----- ----- -----</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 ----- ----- 지급받은 징수촉탁수수료 ----- -----</p> <p>② ----- ----- ----- ----- ----- ----- ----- 경우에에서만 -----</p>
--	---

<p>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2. (생략)</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달성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p> <p>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p> <p>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p> <p>④ (생략)</p> <p>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p> <p>-----</p> <p>1.·2. (현행과 같음)</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p> <p>----- 소속으로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p> <p>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p> <p>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p>
---	---

<p>제7조(지급신청) ① (생략)</p> <p>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④ (생략)</p> <p>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각 호에 따라 ----- ----- 붙여 ----- ----- . -----</p> <p>③ 제1항에 따른 ----- ----- 별지 제3호 서식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 ① ----- 제7조에 따라 ----- ----- ----- . ----- 해당 ----- ----- . -----</p> <p>② 제1항에 따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p>제9조(환수) ① ----- 거짓 그 밖의 ----- ----- ----- . ----- ----- ----- . -----</p>
---	---

<p>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②-----해당----- ----- -----행정착오에 따라----- ----- -----</p> <p>③제1항에 따라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 -----</p>
--	---

붙임3)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5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이유

- 군 출연재단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한 (재)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해산에 대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변경
- 나. 종전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 전부 삭제
- 다. 센터의 운영,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 전부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군 출연재단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한 (재)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해산에 대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달성군 여성문화센터」는 향후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등기 후 달성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될 예정으로,
- 본 조례안은 그에 따라 제명을 「달성군 여성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위탁운영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달성군여성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강의실, 강당,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4.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관리
5. 여성과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6. 문화·예술강좌 및 건강증진 강좌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및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8조(시설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국가, 시 또는 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6.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행사 전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경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3.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④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

권은 무효로 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대표하고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대표를 군수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대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때 수수료는 관람권 대표금액에서 우선 징수하고 사후 정산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여하에 군수가 지정한 담당직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5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군수는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에게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센터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나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중계위치 및 시설 등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대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임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의해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시설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장 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4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再)위탁 할 수 없다.

제22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에 재산을 지

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에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 5조에 따른 사무는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에서 제28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